

(공시보고서 표지 - 공통)

## 주요 경영상황 공시

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주요경영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2017년 6월 16일

금융투자협회 귀중

회 사 명 : 대한토지신탁(주)  
(영문명) DAEHAN REAL ESTATE TRUST CO., LTD  
(홈페이지) <http://www.reitpia.com>

본 점 소 재 지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(삼성동, 아셈타워)  
(전 화) 02-528-4477

대 표 이 사 : 박 성 표

담 당 임 원 : (직 책) 경영이사  
(성 명) 이 인 규 (전 화) 02-528-0405

작 성 자 : (직 책) 재무팀장  
(성 명) 김 혁 환 (전 화) 02-528-0455

제 출 이 유 :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주요 경영상황

※ 본 건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는 주요경영상황 공시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바목, 같은 항 제2호다목, 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제2-59조에 의한 『법정공시 사항』으로 그 내용에 허위, 중요사실의 누락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1항제15호에 의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(제5-5호)

### 단기차입금 증가결정

1. 단기차입내역	차입금액(원)	금삼백억원정(₩30,000,000,000.-)	
	자기자본(원)	191,594,577,717(2017.04.30)	
	자기자본대비(%)	15.66%	
	대규모법인여부		
2. 단기차입금총액 변동내역(원)		차입 전	차입 후
- 기업어음 (원)			
- 금융기관 차입 (원)		43,000,000,000	43,000,000,000
- 당좌차월한도 (원)			
-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(원)			
- 사모사채(만기 1년이하)(원)			
- 기타차입 (원)			
- 단기차입금 합계 (원)		43,000,000,000	43,000,000,000
3. 차입목적		유동성 확보	
4. 차입형태		금융기관차입	
5. 이사회결의일(결정일)		상임이사회의결(2017.05.11)	
- 상임이사 참석 (사외이사참석여부)	참석(명)	3	
	불참(명)	0	
-감사(감사위원)참석여부		감사실장 배석	
6.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		부	
7.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		단기차입금 증가 누계액 : 390억원	

#### <기재상의 주의>

주1) 자기자본의 100분의 10[유가증권시장의 주권상장법인중 대규모법인(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2조원 이상)은 100분의 5] 이상에 해당하는 단기차입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 신고한다.

※ 본 신고서식에 따른 신고일 이전 1년간에 있었던 단기차입금의 증가에 대한 누계금액을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에 기재한다.

주2) 단기차입금은 회계처리기준상의 단기차입금(당좌차월의 경우 당좌차월한도금액을 말함) 및 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금액(액면금액기준)을 말한다. 다만, 콜차입, 만기 7일 이하로 발행되는 기업어음(CP), 만기 7일 이하의 증권금융차입, 금융기관에 의한 무역금융·구매자금 대출, 유동성장기부채 및 기존의 단기차입금 상환을 위한 차입금(만기 1년 이하로 발행되는 사모사채 포함)은 단기차입금에서 제외한다.

주3) 자본잠식법인은 “자기자본”에 최근의 자본금을 기재하고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상기 자기자본은 자본금임을 기재한다.

- 주4) “자기자본 대비”에는 단기차입금 변동금액이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백분율로 기재한다.
- 주5) “차입형태”는 금융기관차입, 기업어음발행, 당좌개설, 당좌차월한도증액, 사모사채발행, 금융기관외의 자로부터 차입 등 해당 차입형태를 기재한다.
- 주6) “차입전일 현재”는 당해차입 이전의 단기차입금총액을 기재하고, “차입당일 현재”는 당해차입을 포함한 단기차입금총액을 기재한다.
- 주7) 상기 기재사항 외의 단기차입과 관련한 투자판단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주요 사항은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가급적 자세하게 기재한다.
- 주8) “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”는 당해 신고사항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“대규모내부거래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100억원이상)” 해당여부를 기재한다.
- 주9) 당해 신고내용이 지주회사(외국지주회사 포함)의 자회사(외국지주회사의 자회사 포함)에 대한 주요경영사항 신고의 경우 “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”란에 자회사명 및 자산총액비중(%)을 기재하되, 자산총액비중은 지주회사의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대비 지주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주식의 최근 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 가액의 비중을 기재하고, 당해 사업연도중 편입한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의 비중을 기재한다.